【일련번호: 1】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주의처분 · 시정요구

제 목 물품관리 업무 소홀

내 용

1. 현황

×× ^ ^에서는 ^ ^ -6066(2018. 4. 11.)호와 관련하여 공공비축미곡 톤백수매 확대 기반 구축을 위하여 심층시료 채취기를 2018년 4월에 아래와 같이 구입하여 읍면에 배부하였다.

[심층시료 채취기 구입 내역]

(단위: 원)

품 명	규 격	단위	수량	단 가	그 액	비고
심층시료 채취기	YU-GP-S1	EA	19	440,000	8,360,000	부가세포함

※ 집행 예산과목(통계목): 405-01(자산취득비)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20호 2018.1.1.시행) I.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 10대 원칙 10 예산 집행절차 준수에는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조례·규칙·예규 등으로 기준과 절차를 정한 경우에는 그 절차와 기준을 반드시 준수하여 예산을 집행"하여야 하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조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이 법과 그 밖의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에 관한 법령을 준수하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사무에 종사하여야 한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66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물품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전산화하여 물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 여야 한다. 같은법 시행령 제66조 각항에는 ①법 제65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 는 표준서식"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서식을 말한다. 1. 물품수입 및 출급원장 2. 비소모품 출납 및 운용카드 3. 물품청구서 4. 물품출급증 5. 반납증 및 인수 증 ②법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물품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전산화하여 그 처리 결과를 전산적으로 기록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식을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고성군 물품관리 조례」제2조제2항 군수는 물품관리공무원(이하'물품관리관'이라 한다.) 지정할 수 있으며, 제3조 물품관리관은 물품의 관리·청구·검수·반환 기타 출납보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도록 하고 있고 제24조에 따라 물품출납원은 물품수입 및 출납원장과 물품카드 등록부를 비치 정리하여야 하고 장부중의 내용을 전산입력 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입력처리로 장부비치를 갈음할 수있도록 하고 있다.

「고성군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제2조에는 직속기관·사업소 물품관리관은 회계담당과장(과가 없는 직속기관·사업소는 직속기관·사업소의 장)으로 지정 되어 있고 물품출납원은 회계담당주사(담당주사가 없는 사업소는 주무담당자)로 지정되어 있다.

3.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 ^ ^에서는 자산취득비로 심층시료 채취기 19개를 구입하여 읍면에 배부하면서 물품대장에 입력(등록)하여 읍면에 배부 시 물품 관리전환을 통하여 물품이 지속적으로 관리되도록 하여야 하나 감사일 현재까지 물품대장에 미 입력(등록)하고 읍면에 관리전환을 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처분 사항

×× ∧∧에서 구입한 물품에 대하여 관리업무를 소홀히 처리 한 A에게 신분상 조치 '주의'처분함.

조치할 사항 ^ ^ 장은

심층시료채취기 19개에 대하여 물품 입력(등록) 및 물품관리전환을 이행하여 주시고 직원교육 및 업무연찬 등을 통해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

【일련번호: 2】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주의처분 · 주의요구

제 목 시설공사 하자 검사 업무 소홀

소 관 부 서 ^ ^

내 용

1. 현황(업무개요)

∧∧ ○○에서는 시설공사 하자 검사 업무에 대하여 총괄 관리하고 있다.

2. 관계법령(판단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0절(공사목적물의 하자) 1. 가. 에 "계약상대자는 전체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시행령 제64조 제1항에 따라 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부터 시행령 제69조에 따라 계약서에 정한 기간(이하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라한다)동안 공사목적물의 하자(계약상대자의시공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한 하자에 한함)에 대한 보수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0조(하자 검사)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9조(하자검사), 「고성군 시설공사의 하자보수 업무규정」제4조에 의하면 시설공사에 대한 최초의 하자검사는 공사 준공일로부터 6월 이내에 실시하고, 이후의 검사는 년2회 상·하반기로 실시하며, 하자담보기간 만료시는 만료일로부터 기산하여 15이전까지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2018년 1월 ×× 부분감사 시행 후 ∪∪-3685(2018. 3.14.)호로 부분감사

결과 통보하면서 처분요구서 NO 2. 시설공사 하자검사 업무 소홀로 행정상 조치 시정으로 조치 받은 사실이 있으며, ^^-7668(2018. 5.14.)호 2018년도 ×× 부분감사 결과 제출 시 해당항목에 대하여 향후 지속적인 업무연찬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였다.

3.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에서는 2017년도 ×× 부분감사 지적사항임에도 불구하고 2018. 7.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실증시험포장 배수로 설치공사'등 31개 사업에 대하여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하자검사를 50회 실시하지 않는 등 하자검사 업무를 지속적으로 소홀히 처리한 사실이 있다.

처분 사항

2017년도 ×× 부분감사 처분요구 목록임에도 2018. 7.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실증시험포장 배수로 설치공사'등 31개 사업에 대하여 시설공사 하자 검사업무를 소홀히 한 B에게 신분상 조치 '주의' 처분함.

조치할 사항 ^ ^ 장은

직원교육 및 업무연찬 등을 통해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주의)

【일련번호: 3】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훈계/주의처분 · 시정요구

제 목 공유(군유)재산 공제 업무 소홀

소 관 부 서 ㅋㅋ

조 치 부 서 ㅋㅋ

내 용

1. 현황(업무개요)

 $\times \times \Rightarrow \exists$ 에서는 $\iiint \because \because$ 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2016. 1. 위탁운영 허가사항을 갱신하였다.

[:::: 현황]

구분	-	-	-	-	창고 및 관리사
5동/2,755㎡	976,8m²	340.5m²	848.7m²	265m²	324m²

※ 해당건물 소재 토지 7필지 사유지임.

- 소재지: ∬∬

- 신청인: □□

- 허가(갱신)기간: 2016. 1. ~ 2020.12.31.(5년간)

2. 관계법령(판단기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조(공유재산 및 물품을 관리하는 공무원의 주의의무)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이 법과 그밖의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에 관한 법령을 준수하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사무에 종사하여야 한다.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2조 제2항에서 고성군행정기구설치조 례상의 소속기관(이하 "청·소"라 한다)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청·소의 장 재산관리관으로 지정되어 있고 제4조에서는 군유재산 관리관은 그 관리재산의 유지 보존 및 취급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7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제20조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로 본다.라 고 명시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건물, 선박과 공유재산 대장가격 1억원 이상 인 것으로서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작물·기계 및 기구의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손해보험이나 공제(共濟)에 가입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고성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시행규칙」별지 제10호서식(허가조건) 제6조에 따라 사용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우리 군이 별도로 손해보험이나 공제계약을 이미 체결한 경우, 사용인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4조에 따라 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사용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한 금액을 군에 납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에서는 ◆◆-23607(2018. 7. 26.)호로 행정재산 사용·수익허가자 공제회비 부과 및 세입조치 협조 요청 공문을 접수하고 재산관리관으로 관리하고 있는 공유(군유)재산(∬∬ ∵∵)에 대하여 관리위탁도 사용·수익허가와 마찬가지로 수탁자가 공제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사항임으로 수탁자에게 공제회비 세입조치를 하여야 함으로 해당대상 관리 현황을 누락되지 않도록 철저한 검토를 하여야 했다.

3.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 ∋∋에서는 2018년도 ∬∬ ∵∵에 대하여 지방재정공제회에 건축시설물로 공제 가입(연장)하여 납부 된 건물공제회비에 대하여 관리위탁도 사용·수익허가 받은 자와 동일하므로 수탁자가 공제회비금액을 납부토록 부과하여 세입 조치하여야 함에도 해당대상 관리 현황을 누락하여 세입조치 하지 않은사실이 있다.

처분 사항

2018년도 ∬∬ ∵∵에 대하여 공제업무를 소홀히 한 C에게 신분상 조치 '훈'계' 처분하고 D에게 신분상 조치 '주의' 처분함.

조치할 사항 ⇒⇒장은

∬∬ ∵∵에 대하여 2019년도 건물공제회비에 대하여 수탁자가 공제회비금액을 납부토록 부과·세입조치하시고 직원교육 및 업무연찬 등을 통해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시정)

【일련번호: 4】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주의처분 · 시정요구

제 목 농기계 임대사업 임대료 관리 소홀

소 관 부 서 ^ ^

내 용

1. 현 황

××에서는 「농업기계화촉진법」제3조 및 제8조2에 따라 농업기계 임대사업을 통한 농업기계화 촉진 및 농가의 영농편의, 농업경영개선에 기여하기 위하여 농기계임대사업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O 체납현황(2019.7.5.현재)

과 목	건 수	급 액(원)	비고
농기계임대사용료	46	1,180,000	2018년: 8건 2019년:38건

2. 관계법령(판단기준)

「고성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제5조(운영 및 관리)에 따르면 농기계 임대사업 관리책임자는 ××소장이 되며, 임대사업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장 부를 비치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제7조(임대절차) 및 제8조(임대기준 등)에서는 사용자는 농기계 사용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하며, 군수로부터 사용허가를 받은 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며, 임대사업 운영에 따른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사용자에 대한 안전교육과 임대농기계의 이상 유무 등을 확인한 후 임대하여야 하고, 사용자의 형평성과 운영 질서를 위하여 1농가당 1대(부속작업기는 본체에 포함)로 하며, 기간은 3일 이내로 한다, 다만, 대기신청자가 없을 경우 사용자의 요청에 따라 그 임대기간을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조례 제9조(사용료 등) 및 제12조(사용계약의 취소 및 정지)에 따르면 임대농기계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농업기계 사용료를 사용신청 시 납부하여야 하며, 농업기계의 운반비용, 사용 유류대 및 그 밖에 농기계 사용과 관련된 부대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하며, 사용료를 체납하였을 경우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에서는 2018.1.1.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농기계를 임대하면서 사용신청 시 징수하여야할 임대료를 징수하지 않아 임대료 1,180천원이 체납된 상태로 있어 농기계 임대료 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처분 사항

실무담당자로서 농기계 임대사업 임대료 관리 업무를 소홀히 한 < E에게 신분상 조치 '주의' 처분함.</p>

조치할 사항 ^ ^ 장은

농기계를 임대하면서 체납된 임대료 1,180천원을 징수하여 주시고 직원교육 및 업무연찬 등을 통해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 시기 바랍니다.(시정)

【일련번호: 5】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주의처분 · 주의요구

제 목 지출 정산 업무 소홀

조 치 부 서 ^ ^

내 용

1. 현황(업무개요)

△ △ 에서는 2018년부터 2019년까지 「×× 진출입로 개설공사」외 9건의 시설 공사를 추진하고 정산검사를 완료하였다.

2. 관계법령(판단기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가 세출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건전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지방계약법 등 관계법령 입법 취지를 근거로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 10대 원칙을 제시하여예산집행 절차를 준수토록 규정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절 제1관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급여충당금,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은 사후 정산하고, 정산 절차는 제2관에 따른다고 명시되어 있다.

「고성군 재무회계 규칙」제55조에 따르면 재무관이 지출원인행위를 할 때에는 지출원인행위의 시기 및 금액에 대하여 지출원인행위부를 정리하여야 하며, 최초의 지출원인행위와의 연관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또한, 회계책임을 지는 공무원은 「지방회계법」제46조 및 제47조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 중 재무관, 지출원 또는 출납원과 그 대리자 분임자 등과 「회계관계 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벌률」제2조 제2호 나목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회계사무에 준하여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예산집행품의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3.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이번 감사기간(2019.7.2.~7.5.)동안「×× 진출입로 개설공사」외 9건의 시설공사에 대하여 사업비 정산 및 지출업무 절차를 확인한 결과, 시설공사 준공후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보험료 등 정산내역을 검토하여 정산품의결재 득하고 지출원인행위 정정 후 사업비를 청구토록하여 지출하였어야함에도, 정산품의 및 감 지출원인행위 없이 사업비를 지급하는 등 지출업무를 소홀히 한사실이 있다.

[표1 지출 업무 부적정 내역]

(단위: 천원)

연번	지급 명령 번호	공사명	계약금액 (A)	지출금액 (B)	정산금액 (A-B)	최종 지출일	감원인 행위일	괴
1	1803	×× 진출입로 개설 공사	34,520	33,525	995	'18.11. 7.	_	
2	1754 1753	◇◇설치공사(건축)	147,976	143,453	4,523	'18.11. 2.	_	
3	1766	◇◇ 전기공사	26,948	26,364	584	'18.11. 5.	_	
4	1902	◇◇ 통신공사	3,109	3,020	89	'18.11.21.	_	
5	1088	2018년 ◎◎ 조성 공사	168,200	160,080	8,120	'18. 7.16.	'18. 7.23.	
6	923	●● 건축공사(2차)	294,115	276,485	17,630	'18. 6.22.	'18. 8. 8.	
7	924	" 전기공사(2차)	105,726	101,493	4,233	'18. 6.22.	'18. 8. 8.	
8	1059	" 통신공사(2차)	21,280	20,605	675	'18. 7. 4.	'19. 1. 3.	
9	1113	" 소방공사(2차)	11,685	11,414	271	'18. 7.16.	'19. 1. 3.	
10	2144	" 전기공사(추가분)	4,594	4,321	273	'18.12.12.	'19. 1. 3.	

※ 자료: ^^ 제출자료 재구성

처분 사항

위 업무를 추진하면서 지출 정산 업무를 소홀히 한 F에게 신분상 조치 **'주**의' 처분함.

조치할 사항 ^ ^ 장은

직원교육 및 업무연찬 등을 통해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주의)

【일련번호: 6】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주의처분 · 주의요구

제 목 계약 업무 부적정

조 치 부 서 ^ ^

내 용

1. 현황(업무개요)

य भी म	위치	사업량	공	사비(천원)	공사기간	도급자
공 사 명 			계	도급액	관급액		
<>◇◇ 내부시설공사	××지내	○바닥기반공사: 576㎡ ○배드시설공사: 1식 ○관수시설공사: 1식	18,964	18,964	П	2018.12.10. ~ 2018.12.19.	** G

2. 관계법령(판단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을 보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공사를 발주하는 경우 종합공사와 전문공사의 구분은 같은 법 제1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정한 바에 따르며, 금액기준에 따른 1인 견적서 제출 가능 수의계약을 종합공사, 전문공사 전기 등 그 밖의 공사, 용역 물품 등으로 분류하고 있다.

「건설산업기본법」제9조 및 제16조에 따라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건설업 등록을 하여야 하며, 전문공사를 도급받으려하는 자는 해당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건설공사를 업으로 하려는 경우에는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시행령 제8조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건설공사"란 종합공사의 경우 공사예정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건설공사와, 전문공사의 경우 공사예정금액이 1천5백만원 미만인 건설공사로 규정하고 있다.

3.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 ^ 에서 2018.12.10. ★★ G와 18,964천원에 계약한 「◇◇ 내부 시설공사」의 경우 예정가격 1천5백만원 이상의 전문공사로 수의계약 시행 시 건설업의 업종과 업종별 업무내용을 확인하여 계약자격을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건설업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등록한 업체로 명시하였음에도 전문건설업이 등록되지 않은 업체와 부적정하게 공사 계약한 사실이 있다.

처분 사항

위 업무를 추진하면서 관련법령 등을 위배하여 부적정하게 업무를 처리한 H에게 신분상 조치 '훈계' 처분하고 I에게 신분상 조치 '주의' 처분함.

직원교육 및 업무연찬 등을 통해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주의)

【일련번호: 7】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주의요구

제 목 기간제근로자 연차 사용 차단

내 용

1. 현황(업무개요)

O 기간제근로자 연차수당 지급 현황

부서명	기간제 근로자 구분	성명	연차수당 지급일수	금액(원)
	_	J	`19.1월~5월(5일)	334,000
A A	_	К	`19.1월~5월(5일)	334,000
^ ^	_	L	`19.1월~5월(5일)	334,000
	_	M	`19.4월~5월(2일)	133,600
$\stackrel{\wedge}{\sim}$	_	N	`19.1월(1일)	73,200
	_	0	`19.2월(1일)	73,200

2. 관계법령(판단기준)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제2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계소가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터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제5항에는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라고규정하고 있고,

고성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관리 규정 제18조(휴일 등)에 따르면 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의 경우 「고성군 공무직근로자 관리 규정」을 준용하되, 단시 간근로자의 경우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부여한다.

고성군 공무직근로자 관리 규정 제53조(휴가의 종류) 공무직의 휴가는 연차 유급휴가, 공가, 병가, 특별휴가로 구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규정 제 54조 (연차 유급휴가) 제3항 및 제5항에 따르면 사용부서의 장은 근로자의 연차 유급휴가를 승인하는 경우 시간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휴가 8시간은 휴가 1 일로 계산하고 사용부서의 장은 근로자로부터 연차유급 휴가원의 제출이 있을 때에는 업무 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3.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에서는 `19년 1월~5월까지 ^^ J 외 기간제근로자 5명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및 그 취업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1개월 개근시 익월 이후 연차를 사용하도록 조치하여야 함에도 위 기간제근로자 연차수당 지급 현황과 같이 연차수당을 당월 급여 지급시 지급함으로서 기간제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차단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장과 ☆☆장은

직원교육 및 업무연찬 등을 통해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주의)

【일련번호: 8】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훈계/주의처분 · 시정요구

제 목 세입세출외현금 관리 소홀

조 치 부 서 ^ ^

내 용

1. 현황(업무개요)

고성군 ×× ^^ P은 2017.10.16.~ 2019.7월 현재까지 세입세출외현금 및 경리업무담당자로, Q은 2018.1.1. ~2019.7월 현재까지 지출원 및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 관계법령(판단기준)

지방재정법 제34조(예산총계주의의 원칙) 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한 회계 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하고,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하여야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는 경비의 범위)에 따라 공공시설 손실부담, 계약보증·입찰보증·차액보증 및 하자보수보증, 다른 법률에 의한 예치, 사무관리상 필요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경비는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관리하되, 이 영 또는 다른 법령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접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고성군 재무회계 규칙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에 따르면 고성군 ××는 제1관서로 회계관계공무원은 별표 5와 같이 지정하고, 별표 5에 따르면 제1관서의 세입세출외현급출납원은 경리담당자가 되고,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 지정하여 2인이상이 업무를 처리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지방회계법 제36조(지출기관과 출납기관의 분리)에 따르면 재무관, 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서로 겸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규칙 제75조(세입세출외현금 종류)에는 보증금, 보관금, 잡종금 및 기타로 구분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76조(세입세출외현금의수납절차)와 제77조(세입세출외현금의 반환절차)에는 수납 및 반환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규칙 제77조 제4항에 따르면 출납원은 반환기간이 경과한후에도 법 제82조에 따라 5년 동안 세입세출외현금의 반환청구가 없는 경우 군에 귀속시키고 징수관에게 세입편입을 요구하여야 하고, 같은 규칙 제77조 제5항에따르면 출납원은 세입세출외현금을 이월하는 경우에는 세부내역을 덧붙여 적어이월하여야 하고, 같은 규칙 제77조 제5항에는 출납원은 제4항에 따라 세입세출외현금의 세입편입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해당 세입세출외현금을 소관하는 부서의 담당자로 하여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최소 1개월 전에 납부자에게 1회이상 이 사실을 통보토록 하여야 하며, 주소 이전 등의 사유로 통보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증빙자료를 첨부하도록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3.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O 회계관계공무원 지정 업무 부적정

그러나 ××에서는 ^^ Q이 회계업무담당으로 지출원에 지정되어 있음에도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을 겸직하고 있으며, P은 경리업무담당자로서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으로 지정하여야 하나 지정하지 아니하고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음.

O 세입세출외현금 관리 소홀

- ××에서는 전년도 세입세출외현금을 이월하는 경우에는 세부내역을 덧붙여 적어 이월하여야 함에도 총괄 이월하여 그 세부내역을 알 수 없는 상태로 관리하 고 있으며.
- 지방재정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및 고성군 재무회계규칙 제75조내지 제77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경비만 세입세출외현금으로 수납 및 반환하여야 하나 그 세부내역을 알 수 없는 각종 보조사업 회수 수입, 직불금 회수 수입 등은 지방재정법 제34조 예산총계주의의원칙에 따라 세입과 세출예산에 편성하여 처리하여야 하나 세입세출외현금에장기간 보관하고 있으며.
 - ≒≒, ▽▽ 회원가입비는 관련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별도 계좌를 개설

하여 처리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 또한 계속 이월되어온 현금은 그 원인을 밝혀 반환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도 5년동안 반환청구가 없는 경우 사전 통지 등 절차를 거쳐 군 세입처리함이 타당함에도 그 세부내역을 확인할 수 없어 계속이월하고 있음.

<고성군 ×× 세입세출외현금 내역>

(2019.6.30.현재)

회계 연도	현금 구분	전년도 이월액	금년도 수입금	지출액	잔액
계		745,671,721	444,049,410	498,826,999	690,894,132
	보관금- 임시보관급	484,456,170	36,834,831	30,874,381	490,416,620
`19	잡종금기타 -≒≒	96,155,551	406,134,579	467,472,618	34,817,512
	잡종금기타 -▽▽ 회원비	165,060,000	1,080,000	480,000	165,660,000

※ 임시보관금 주요 현금내역: 기간제근로자 보험료, 각종 보조사업 회수 수입, 직불금 회수 수입 등

처분 사항

2018. 1. ~ 2019. 7. 까지 세입세출외현금 관리를 소홀히 한 P에게 신분상 조치 '훈계' 처분하고 Q에게 신분상 조치 '주의' 처분함.

조치할 사항 ^ ^ 장은

×× 세입세출외현금 내역을 정리하여 ≒≒, ▽▽ 회원가입비는 관련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별도 계좌를 개설하여 관리하시고 계속 이월 되어온 현금은 그 원인을 밝혀 5년 동안 반환청구가 없는 경우 사전 통지 등 절차를 거쳐 군세입 처리하여 주시고 기타사항도 예산총계주의의 원칙에 따라 세입과 세출 예산에 편성 조치하시기 바라며, 직원교육 및 업무연찬 등을 통해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시정)

【일련번호: 9】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시정요구

제 목 기간제근로자 인부임 지급 부적정

 Δ 관 부 서 ∂ ∂

조 치 부 서 ∂∂

내 용

1. 현황(업무개요)

성명 (생년월일)	정산 기간	기지급액	정산액	회수액	ИΩ
계				305,600	
R (-)	3.1. ~ 3. 31.	1,725,190	1,558,190	167,000	근무일수(1.5일)및 주휴일수(1일)차감
S (-)	6.1. ~ 6.30	2,151,050	2,079,250	71,800	근무일수 1일 차감
T (-)	6.1. ~ 6.30	1,519,610	1,452,810	66,800	근무일수 1일 차감

2. 관계법령(판단기준)

근로자를 채용하여 그 복무한 대가의 인부임(급여)를 지급함에 있어 근로기준법 및 그 취업규칙인 고성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관리 규정 등 제법규에 따라 체결한 근로계약서와 근무상황 등을 확인하여 인부임을 지급함이 타당하다.

3.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그러나 ×× ∂ ∂ 에서는 붙임 기간제근로자 인부임 정산내역과 같이 R 외 2명의 기간제근로자 인부임을 지급함에 있어 근무상황 확인 소홀과 근무일수 착오로 인하여 인부임 금305,600원을 과다지급 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장은

기간제근로자 인부임 과다지급 한 금305,600원을 회수조치 하시고 직원교육 및 업무연찬 등을 통해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시정)